

○○○씨 세보편수규정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본회는 ○○○씨 세보편수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사무소(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 3 조 본회 목적은 세보를 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 임 원

제 4 조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 | | |
|------------------------|-------------------|-------------|
| 1. 위원장 : 1인 | 2. 부위원장 : 약간 명 | 3. 사무장 : 1인 |
| 4. 재 무 : 1인 | 5. 감 사 : 2인 | |
| 6. 수단위원장 : 약간 명, | 위원 : 약간 명(각 파 추천) | |
| 7. 교정위원 : 약간 명(각 파 추천) | 8. 서 기 : 2인 | |
| 9. 고 문 : 약간 명 | | |

제 5 조 임원은 문중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보결선임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본회 임원은 무보수로 하고 사무장 및 서기는 약간의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는 보사(譜事) 종시까지로 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자파내의 실무책임부(負)한다.
3. 사무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일체를 관리 담당한다.
4. 재무는 본회 재무전반을 책임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일반사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6. 수단위원은 각 파 담당 지역 내 수단 및 단비 징수 임무를 부여한다.
7. 교정위원은 수단원고를 명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8. 서기는 위원장 및 사무장의 지시 하에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9. 고문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마찰, 분규 사례가 유(有)할 시 위원장단과 심리처리 한다.

제 3 장 : 재 정

제 9 조 본회의 재정은 단비 및 보책대 수입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협찬금은 자의에 의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본보사의 명전(名錢:單金)은 수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책대(譜冊代) 또한 같다.

제 12 조 본회의 재정은 위원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무로 인한 출장시는 여비를 실비지급한다.

제 4 장 : 회 의

제 14 조 본회에 아래의 회의를 둔다.

1. 문중대표자회의

2. 위원회의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고문이하 전임위원회의 등 수시 소집한다.

제15조 본회의 임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약재개정, 예산편성, 결산승인, 임원선출 및 보선, 급료 및 수당액 결정 기타 중요한 건을 결의한다.

제16조 본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 심 리

제17조 수단원고 등에 마찰, 분규 등 사례가 유할 시 위원장은 위원장단 및 고문단의 재정심리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리 처리한다. 이때에 당사자 쌍방은 심리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제 6 장 : 부 칙

제18조 본회(譜所)에 아래의 장부를 비치한다.

- | | | |
|-------------|---------|-----------|
| 1. 규약 및 수칙 | 2. 임원명단 | 3. 회의록 |
| 4. 시도기(時到記) | 5. 수납부 | 6. 금전출납부 |
| 7. 은행거래장 | 8. 징빙서류 | 9. 회인(會印) |

제19조 수단 수칙은 별도 제정한다.

제20조 본 규약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수단수칙收單守則】

第一章 基 準

- 一. 基準譜：舊譜(戊午譜1978年)에 準據한다.
- 二. 家乘：前項이 模糊할 時는 名目에 家乘에 依據해도 無妨하다.
但, 諸般根據를 保促치 못할 時는 譜所에 相議 處理한다.

第二章 收 單

- 一. 戶籍：收單資料로서 一次的으로 戶籍謄本을 參考로 한다.
- 二. 段數：譜冊은 一行 六段으로 한다. 이때에 다음 壘에 面數를 表示한다. 또한, 다음 壘上段에 由來 面數와 名單을 記한다.
- 三. 字數：事由欄은 一行 九字 高에 八字平으로 한다.
- 四. 名字：舊譜에 記載 된 名과 戶籍上 名이 相違할 時는 戶籍名을 新譜에 記載하고 舊譜名은 初名으로 記載한다. 名字는 한글로 附記한다.
- 五. 生卒：生卒年月日은 西紀와 干支로 併記한다.
- 六. 職位：舊譜記載된 亡者의 職位는 舊譜대로 하며 生者의 職位는 다음과 같다.
 - ① 公職은 定規事務官 以上 또는 司法, 行政, 外務, 技術, 考試合格者(資格：會計士, 辨理士, 技術士, 辯護士, 專門醫, 韓醫師, 齒醫師)
 - ② 軍은 領官級 以上, 警察은 警正 以上
 - ③ 教育者는 大學助教授 以上, 初·中·高校長級 以上, 學校法人 理事長
 - ④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市道郡區)
 - ⑤ 政黨, 社會團體長
 - ⑥ 大企業 또는 上場法人은 部長級 以上

- ⑦ 私企業은 從業員 三百名 以上 代表
- ⑧ 國營管理企業體의 本部(本社) 課長級 以上 (局·處長 體制機關은 部長級 以上, 言論機關 部長級 以上)
- 七. 學位: 博士 以上
- 八. 賞勳: 勳章 以上(寫本提出) 受賞者
- 九. 配位: 生者는 室, 亡者는 配로 統一한다. 姓名과 貫鄉 姓氏 父名 顯祖○○后로 記載하고 生卒年月日을 쓴다.(出身地名도 簡記할 수 있다.)
- 十. 女: 女도 名과 生年月日을 記載하고 出嫁한 女는 夫의 姓名과 貫鄉 媳父의 名과 子女의 名을 쓰고 顯祖○○라고 簡記한다.
- 十一. 行狀: 生存者는 行狀을 記載하지 않는다.
- 十二. 行列圖에 따라 記載한다.
- 十三. 系不名: 譜系不名한 族人也 收單할 수 있다. 이때 譜所에 相議해야 한다.

第三章 單 金

- 一. 單金: 冠 一萬圓, 童 五仟圓으로 한다. 女는 童과 같다. 出嫁한 女는 除한다.
- 二. 車馬費: 收單 自派分을 完納한 委員에게 收單金中 若干의 謝禮費를 支拂한다.
- 三. 免除: 生死不明 其他 特定人을 限하여 單金을 免除할 수 있다. 但, 任員會議에서 決定한다.
- 四. 諸手當: 諸般手當은 任員會議에서 決定한다.

第四章 譜冊代

- 一. 冊代: 譜冊은 假定 三卷一帙 每卷 六百面으로 하고 一帙帙를 目標로 하여 任員會議에서 冊代를 決定通告할 것이나 收單提出時 申込金條로 貳萬圓 以上 收納한다.
- 二. 其間: 譜冊 完成其間은 二〇〇六年 六月 內로 假定한다.
- 三. 通告: 譜冊이 完成되면 各派別로 代金 및 頒帙에 關한 通知를 한다.
- 四. 序文: 委員長이나 元老名義로 一章, 跋文도 元老名義로 一章만 한다.
- 五. 畫報: 靖平公影幀 및 寶物給 文化遺蹟을 登載한다.

第五章 譜 冊

- 一. 用紙: 最高級 코프紙로 한다.
- 二. 體表: 十六切 四六倍版 洋裝本으로 한다.
- 三. 字形: 明朝體, 楷書體, 鮮明印刷로 한다.
- 四. 表示: 欄外 住所, 派, 代數 等を 明記한다.
- 五. 粧帖: 最高級 厚型表紙를 使用하고 金字로 ○○○氏世譜 上, 下 編이라고 한다.
- 六. 本譜事 終了后 收單決算을 한 殘餘金이 有할 時는 任員會議決議에 依하여 處理한다.
- 七. 其他 未備한 事項은 任員會議決議에 依하여 訂正 또는 追加할 수 있다.

2007年 ○月 ○日

○○○씨세보편수위원회